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2040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7. 11.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1.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21. 12. 23. 접수 제153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22. 3. 17. 접수 제28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체결일	보증금액(원)	대출예정금액(원)	보증기간
1	2015. 12. 8.	85,000,000	100,000,000	2015. 12. 8.~2020. 7. 8.
2	2016. 6. 29.	90,000,000	100,000,000	2016. 6. 29.~2026. 6. 29.
3	2020. 6. 29.	90,000,000	100,000,000	2020. 6. 29.~2022. 6. 29.
4	2020. 6. 29.	12,600,000	14,000,000	2020. 6. 29.~2025. 6. 29.
5	2019. 8. 8.	127,500,000	150,000,000	2019. 8. 8.~2029. 8. 8.

나. D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22. 8. 31. E조합에 대한 D의 채무 합계 399,382,1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차전699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22. 10. 17. ‘D은 원고에게 400,691,527원 및 그중 399,312,297원에 대하여 2022. 9. 14.부터 2022. 9. 26.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2.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D은 2021. 12. 2.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2. 23.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B는 2022. 3. 7. 피고 C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피고 B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3. 17.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반면에 E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도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D 사이에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22. 5. 10.경 대출금 채무의 이자지급을 연체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8개월 이후에 D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인 D이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처분한 행위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해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는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B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D의 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운영하는 사업상 인부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나 전득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전득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전득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등 참조).

올가 제7,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B는 영어조합법인 F의 대표조합원으로서 수산물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피고 B는 D에게 2021. 12. 2. D에게 15,000,000원, 2021. 12. 22.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D과 피고 B는 자매 사이로, D은 양식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B도 수산물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점, D과 피고 B 모두 전남 완도군 G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는 D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 B가 제출한 올가 제15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B가 고용한 인부들의 숙소로 실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손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상회복으로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준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원고는 소외 D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피고 D은 소외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2.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피보전권리)

원고는 소외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차전 699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대법원 사건검색 및 지급명령신청서 참조)

소외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접수시까지 지급해야 할 금원은 구상금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399,312,297원과 지연손해금의 합계금이 이 사건 피보전권리액입니다.

3. 소외 D, 피고 B 및 피고 C의 사해행위

소외 D은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2. 매매를 원인으로 동생 피고 B에게 2021.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었고, 피고 B는 2022. 3. 7.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 금 20,000,000원, 채무자 : B)을 원인으로 피고 C에게 2022. 3. 17.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그러므로 피고 B는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수익자의 지위이며, 피고 C는 수익자인 피고 B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로서 전득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 수익자 및 전득자 또는 전득자 만을 피고로 지정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취소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입니다.

채권자가 전독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 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독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독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D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매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D와 피고 B 사이 매매계약 및 피고 B와 피고 C 사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소외 D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의 존부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소외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고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게도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인 소외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인자인 피고들도 사해행위에 적극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D과 피고 B 사이 2021. 12. 2.자 매매계약 및 피고 B와 피고 C 사이 2022. 3. 7.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4. 피고들의 원상회복의무

그렇다면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D과 피고 B 사이에 성립된 매매계약 및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성립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수익자인 피고들도 악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으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설정계약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별지

목 록

1. [토지] 전라남도 완도군 대 251㎡

2. [건물] 전라남도 완도군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완도군

위 지 상

목조 스투트지붕 단층 주택 59.5㎡

브릭조 스투트지붕 단층 주택 39.67㎡

목조 스투트지붕 단층 창고 9.92㎡

끝.

